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백년대계 EMP50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③ (생략) ④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~ 2. (생략) 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3.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</p>
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가. (생략) 나. 트러스톤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50%이하</u>로 한다. <신설></p> <p>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트러스톤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40%이하</u>로 한다. <u>다. 트러스톤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5%이하로 한다.</u>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p>